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373
----------	-------

발의연월일 : 2025. 11. 19.

발 의 자 : 황 희 · 박수현 · 이용선
한민수 · 박용갑 · 신영대
민홍철 · 이건태 · 허 영
박희승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지반침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반침하 문제에 대하여 고도화된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던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제작을 의무화하여 지역별 안전도를 평가·공개·활용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심의기구로서 중앙지하안전위원회를 신설하며, 인공지능 기반의 탐사장비·기술 개발, 지하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 등의 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지반침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지하안전관리 자문단을 폐지하고, 중앙지하안전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법령·제도의 개선,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및 제11조 등).

나. 지하안전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에 인공지능 기반의 탐사장비·기술 개발, 지하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1항).

다.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제작하고 공개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긴급 보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2 신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본문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한 후 제11조에 따른 중앙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을 “(중앙지하안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의뢰하는”을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지하안전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연구·개발사업”을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공지능 기반의 탐사장비 및 기술 개발
2. 지하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

제5장에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지반침하 안전지도의 제작 등) ① 시·도지사는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안전도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한 지도(이하 “지반침하 안전지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제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검토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긴급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0조제1호 중 “제12조에”를 “제11조에 따른 중앙지하안전위원회 또는 제12조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반침하 안전지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시·도지사가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안전도를 평가하여 제작한 지도는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반침하 안전지도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략)	제6조(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u>협의하여야</u>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u>협의 절차</u> 를 생략할 수 있다.	③ ----- ----- ----- <u>협정한 후 제11조에 따른 중앙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u> <u>안</u> -----. ----- ----- <u>그러하지 아니하</u> <u>다.</u>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u>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u>) 국토교통부장관은 <u>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자문단을</u> 둘 수 있다.	제11조(<u>중앙지하안전위원회</u>) ① <u>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지하안전위원회를 둔다.</u>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	4. -----

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
관이 의뢰하는 사항

<신 설>

제13조(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
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③ (생략)

<신 설>

---정하는---

② 중앙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① -----

-----다
음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
-----.

1. 인공지능 기반의 탐사장비
및 기술 개발

2. 지하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

②·③ (현행과 같음)

제41조의2(지반침하 안전지도의
제작 등) ① 시·도지사는 지
반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안전도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한 지도
(이하 “지반침하 안전지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5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2조에 따른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바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제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검토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긴급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

-----.

1. 제11조에 따른 중앙지하안전위원회 또는 제12조에-----

2. ~ 5. (생략)	----- 2. ~ 5. (현행과 같음)
--------------	---------------------------